

Mh.a.1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4-4 청암빌딩 3층
Tel 796-1351 Fax 749-1417
<http://www.unhcr.or.kr>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1997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



UNHCR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1997

COLLECTION OF BASIC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REFUGEES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1997

한국어판 서문

번역 : 장복희 박사(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Chang, Bok-Hee (Institute of Legal Research, Yonsei University)

감수 : 김윤열 前대표(유엔 개발 계획)

Kim, Yoon-Yul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정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Chung, In-Seop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금세기는 난민의 세기'라고 불리울 만큼 난민문제가 지속적으로 전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본서는 난민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집으로서, 난민문제에 관계하는 모든 이에게 유용할 목적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다.

본서는 1950년 12월 14일 유엔 총회 결의문428(V) 부속서로서 채택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규정(제 I장), 난민의 최소한의 권리선언으로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 II장), 그리고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 III장)를 수록하고 있다. 제II장과 제III장은 법무부 발간 기준의 한국어본을 중심으로 약간의 수정과 관련 부록을 포함하고 있다.

UNHCR이 발간한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제 IV장)이 또한 번역되었으며, 본 편람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규정된 난민정의의 다양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고, 기타 관련 국제조약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장은 색인의 성격으로서 난민관련 용어(제 V장)에 관한 것이다.

본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공무원, 학자, 법률가, 학생 및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모든 이가, 국제난민법에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번역은 UNHCR과 협의를 거치고 정부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였으며, 영어와 불어로 된 조약 원본에 따라 이루어졌다.

감수를 맡아 주신 김윤열 대표님, 정인섭 교수님 그리고 실무에서 애써주신 UNHCR 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서가 난민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난민을 돋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1997년 12월

역자

목 차

한국어판 서문	v
I.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1
II.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1
(1951년 7월 28일)	
III.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43
(1967년 1월 31일)	
IV.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49
V. 난민 관련 용어	135

I.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195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 428 (V)

국제연합 총회는,
1949년 12월 3일 결의문 319 A (IV)¹⁾에 의거하여,

- 1) 국제연합 총회는 1949년 12월 3일 결의문 319 (IV)에서, 1951년 1월 1일부로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은 결의문 428 (V)의 부속서로서 195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이 결의문에서, 국제연합 총회는 또한 국제연합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이 사무소의 권한에 속하는 난민에 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등판무관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등판무관의 임무는 인도적, 사회적 및 전적으로 비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고등판무관의 임무는 이 규정과 국제연합 총회의 후속 결의문에 의하여 규정된다. 국제연합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관한 결의문은 정보안내 HCR/INF/48/Rev.2.로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에 의하여 발행된다.
- 고등판무관은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연차 보고를 한다. 이 규정 제4항에 의하여, 난민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경제사회이사회(1951년 9월 10일 결의문 393 (XIII) B)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이후 이 위원회는 국제연합 난민기금(UNREF) 집행위원회로 재구성되었다(1954년 10월 21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 832 (IX)에 의하여 채택된 1955년 3월 31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문 565 (XIX)). 후자는 1958년 고등판무관 업무계획 집행위원회로 대체되었다(1957년 11월 26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 1166 (XII) 및 1958년 4월 30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문 672 (XXV)). 위원회의 권한으로 집행위원회는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실질적인 원조사업을 승인하고 감독하며, 이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청이 있으면 고등판무관을 자문한다. 최초 집행위원회는 24개국으로 구성되었다. 1963년에는 위원국 수가 30개국으로 증가하였고(1963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 1958 (XVIII)), 1967년에는 가능한 한 폭넓은 지리적 안배를 위하여 31개국으로 늘어났다(1967년 12월 11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 2294(XXII)).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처음에는 3년간 존속될 예정으로 설치되었다(규정 제5항). 1953년 10월 23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 727 (VIII), 1957년 11월 26일 결의문 1165 (XII), 1962년 12월 7일 결의문 1783 (XVII), 1967년 12월 11일 결의문 2294

1. 이 결의의 부속서로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을 채택한다.
2. 국제연합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이행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무소의 권한에 속하는 난민에 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 (a)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고, 그와 같은 협약하에서 필요한 이행조치를 취한다.
 - (b) 난민의 상태를 개선시키고 보호를 요하는 난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취하여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등판무관과 특별협정을 체결한다.
 - (c) 자국 영역으로 난민의 입국을 인정하고, 국도의 곤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배제시키지 아니한다.
 - (d) 난민의 자발적인 본국귀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고등판무관의 노력을 지원한다.
 - (e) 특히 그들의 귀화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난민의 동화를 촉진한다.
 - (f) 국가기관이 일반적으로 다른 외국인에게 발부하는 것과 같은 여행증명서 및 기타증명서를 난민에게 발급하고, 특히 그들의 재정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 (g) 난민에게 그들의 자산과 특히 정착에 필요한 자산의 이전을 허용한다.
 - (h) 난민의 수, 상태 및 난민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를 고등판무관에게 제공한다.
3. 이 결의문 이행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비회원국에도 부속서와 함께 이 결의문을 송부할 것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XXII), 1972년 12월 12일 결의문 2957 (XXVII), 1977년 12월 8일 결의문 32/68, 1982년 12월 18일 결의문 37/196, 1987년 12월 7일 42/108, 1992년 12월 16일 결의문 47/104에 의하여, 이 사무소는 임기가 5년씩 연장되었고 현재 임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다.

부 속 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제1장 일반규정

1.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 총회의 권한하에서 행동하며, 국제연합의 후원하에, 이 규정의 범위안에 속하는 난민에 대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난민의 자발적인 본국귀환이나 새로운 국내공동체에서의 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또한 관련국 정부의 승인하에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을 모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난민의 국제적인 지위에 관한 분쟁과 같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등판무관은 난민문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한다.
2. 고등판무관의 임무는 전적으로 비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그 임무는 인도적,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난민집단 및 난민의 범주에 속하는 자들과 관계된다.
3. 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 총회 또는 경제사회이사회가 그에게 부여하는 정책지시에 따른다.
4. 경제사회이사회는, 고등판무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난민문제 해결에 관한 관심표명과 헌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이 이사회가 선출하는 국제연합 회원국과 비회원국대표로 구성되는 난민문제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5. 국제연합 총회는 제8차 정기회기 이전에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195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임무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무소에 관한 조치를 재검토한다.

제2장 고등판무관의 임무

6. 고등판무관의 권한²⁾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A. (i)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협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민기구 현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는 자.

(ii)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2) 이 규정에 정의된 난민 외에도, 해를 거듭하면서 국제연합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후속 결의문에 따라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속하는 다른 부류의 자들도 고등판무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 1167 (VII) - 1388 (XIV) - 1501 (XV) - 1671 (XVI) - 1673 (XVI) - 1783 (XVII) - 1784 (XVII) - 1959 (XVIII) - 2958 (XXVII) - 3143 (XXVIII) - 3454 (XXX) - 3455 (XXX) - 31/35 - 32/67 - 32/68 - 33/26 - 34/60 - 35/41 - 35/135 - 35/187 - 36/125 - 36/161 - 37/195 - 38/121 - 39/106 - 39/140 - 40/118 - 42/106 - 42/109 - 42/110 - 43/117 - 44/137.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문 1655 (LII) - 1705 (LIII) - 1741 (LIV) - 1799 (LV) - 1877 (LVII) - 2011 (LXI) - 1978/39 - 1980/8 - 1981/32 - 1981/186 - 1982/2 - 1982/149 - 1989/164 - 1990/55 - 1990/78 - 1990/260.

국제난민기구가 그의 활동기간동안 취한 난민 적격성에 대한 결정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여된 난민의 지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고등판무관의 권한은 제A항에 규정된 자가 다음의 것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종지된다.

- (a) 그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 (b)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또는
- (c) 그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경우. 또는
- (d)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또는
- (e) 그가,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 이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계속 거부하기 위한 다른 이유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 경우. 순수한 경제적인 성격의 이유는 원용될 수 없다. 또는
- (f) 무국적자가,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 이외에 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계속 거부하기 위한 다른 이유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B.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7. 제6조에 규정된 고등판무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각 국적국과 관련한 전기조항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1개국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 또는
- (b) 거주국의 관할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보유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자. 또는
- (c)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나 기구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자. 또는
- (d) 범죄인 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른 범죄, 런던 국제군사재판소헌장 제6조 또는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³⁾

8. 고등판무관은 이 사무소의 권한에 속하는 난민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a)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비준을 장려하고, 이의 적용을 감독하며 개정을 제의한다.
- (b) 각 정부와의 특별협정을 통하여 난민의 상태를 개선시키고 보호를 요하는 난민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이행을 촉진 한다.
- (c) 난민의 자발적 본국귀환 또는 새로운 국내공동체에서의 동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정부차원 및 민간차원의 노력을 지원한다.
- (d) 각 영역으로 난민의 입국을 고취시키며, 극도의 곤경에 처한 자들이 이에 배제되지 아니하게 한다.
- (e) 난민의 자산, 특히 그들의 재정착에 필요한 자산의 이전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진력한다.

3)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 217 A (III).

(f) 영역내에 있는 난민의 수, 상태 및 난민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제공받는다.

- (g) 각 정부와 관련 정부간기구와의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 (h) 난민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와 최선의 방법으로 연락관계를 수립 한다.
- (i) 난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노력을 조정한다.

9. 고등판무관은, 그의 가용자원의 범위내에서,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에 따라 난민의 자발적인 본국귀환과 재정착을 포함한 추가활동을 한다.

10. 고등판무관은, 난민의 원조를 위하여 받은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금을 관리하고, 그러한 원조사업을 실행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민간단체 또는 적절한 경우 공익기관에 기금을 분배한다.

고등판무관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거나 또는 유용하지 못한 제의는 거절할 수 있다.

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 총회의 사전 승인없이 각국 정부에 자금 요청을 하거나 일방적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등판무관은 연차보고서에 이 부분의 운영보고를 포함시킨다.

11. 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그 보조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진다.

고등판무관은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연차 보고를 한다. 그 보고서는 국제연합 총회 의제의 독립항목으로 취급된다.

12. 고등판무관은 각종 전문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재정

13. 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국제연합 총회에 의

하여 선출된다. 고등판무관의 임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제의로 국제연합 총회가 이를 승인한다. 고등판무관은 1951년 1월 1일 이후 3년을 임기로 선출된다.

14. 고등판무관은 같은 임기의 그과 다른 국적을 가진 부고등판무관을 임명한다.

15. (a) 할당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등판무관 사무소 직원은 고등판무관에 의하여 임명되며, 이들 직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등판무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b) 그러한 직원은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목적에 진력할 수 있는 자종에서 선출된다.

(c) 직원의 고용조건은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직원규정과 이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공표한 규칙에 따른다.

(d) 무급직원의 고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둘 수 있다.

16. 고등판무관은 난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부와 그 국가에서의 대표임명의 필요성에 관하여 협의한다.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가에는, 그 국가정부가 승인한 대표가 임명될 수 있다. 같은 조건하에서, 동일한 대표가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7. 고등판무관과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적절한 연락을 취하고 협의를 한다.

18.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고등판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19.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둔다.

20.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국제연합 예산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국제연합 총회가 후속적으로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임무와 관련된 운영경비 이외의 여타 지출경비는 국제연합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등판무관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모든 경비는 자발적 기부금에 의하여 충당된다.

21.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운영은 국제연합 재정규정과 이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공표한 재정규칙에 따른다.

22. 고등판무관 기금과 관련한 업무는 국제연합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으며, 이 위원회는 기금이 할당된 기관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기금의 관리 및 할당에 관한 운영조치는, 국제연합 재정규정과 이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공표한 규칙에 따라 고등판무관과 국제연합 사무총장간의 합의를 거친다.

II.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년 7월 28일)

전 문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은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번 난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난민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려하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종전의 국제협정들을 개정하고 통합하며, 그러한 문서의 적용범위와 그 문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새로운 협정에 의하여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며,

난민에 대한 비호의 부여는 특정국가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또한 국제적 범위와 성격을 가진다고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은 국제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려하며,

모든 국가가 난민문제의 사회적, 인도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가간의 긴장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보호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의 이행을 감독할 임무를 맡고 있음을 유의하고, 또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치의 효과적인 조정은 각국과 고등판무관간의 협력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난민”의 용어 정의

A. 이 협약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 (1)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협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민기구 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 활동기간동안 취한 난민 부적격성에 대한 결정은 이 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난민의 지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2)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 “국적국”의 용어는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의미하며, 또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국적국중 어느 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당해인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B. (1) 이 협약의 목적상, 제1조 제A항의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용어는, 다음중 어느 하나

- (a)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b)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각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기 두가지 의미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백히 하는 선언을 한다.
- (2) (a)규정을 채택한 체약국은 (b)규정의 적용을 채택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

C. 이 협약은 제A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적용이 중지된다.

-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또는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또는
(5)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제A항 제1호에 해당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에 호

소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다만, 이 조항은 동조 제A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 이 협약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외에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의 지위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 그러한 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협약상의 이익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E. 이 협약은 당해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보유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문서에서 정하여진 범죄를 저지른 자.
-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
-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2조 일반적 의무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제3조 무차별원칙

체약국은 난민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종교

체약국은 그 영역 내의 난민에게 그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한다.

제5조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권리

이 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과는 별도로 체약국이 난민에게 인정하는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 “동일한 사정하에서”的 용어

이 협약의 목적상, “동일한 사정하에서”의 용어는 성격상 난민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그가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당해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체재 또는 거주의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이 협약이 보다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모든 난민은 어떠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3년간 거주한 후에 그 체약국의 영역내에서의 입법상의 상호주의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어진 권리와 이익 외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난민에게도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모두 이 협약의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 및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권리와 이익에도 적용한다.

제8조 예외적 조치로부터의 면제

체약국은, 특정한 외국국민의 신체,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질 수 있는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 형식상 당해 외국의 국민인 난민에 대하여 단순히 그 국가의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국의 법령상 이 조항에 언급된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체약국은 적당한 경우 그러한 난민에게 유리하게 예외적 조치로부터의 면제를 인정한다.

제9조 잠정조치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시 또는 기타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개인에 관하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보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잠정조치는, 특정 개인이 사실상 난민인가의 여부 또한 그에 관하여 그러한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체약국이 결정할 때까지에 한한다.

제10조 거주의 계속

1. 난민이 제2차 세계대전중에 강제로 퇴거되어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 이동되어서 그 영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강제된 체류기간은 그 영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난민이 제2차 세계대전중에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강제로 퇴거되었다가 이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거주목적으로 그 영역 내에 다시 귀환한 경우, 그러한 강제퇴거 전후의 거주기간은 계속적인 거주가 요건이 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하나의 기간으로 간주된다.

제11조 선원 난민

체약국은 자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서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난민의 경우에, 자국의 영역 내에서 정착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타국에서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에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2장 법적 지위

제12조 개인적 지위

1.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그의 주소지 국가의 법에 의하여,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난민이 이전에 취득한 권리로서 개인적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 특히 혼인에 수반되는 권리는, 당해 권리가 그 체약국의 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체약국에 의하여 존중된다. 다만 당해 권리는 난민의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 동산 및 부동산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에 관한 기타 권리의 취득 및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기타 계약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4조 저작권 및 산업체재산권

난민은 발명, 의장 또는 모형, 상표, 상호와 같은 산업체재산권과 문학적, 예술적 및 학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그가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기타 체약국의 영역에서도, 그가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국민에게 그 체약국의 영역에서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제15조 결사의 권리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국가의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국민에게 부여한 것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6조 재판을 받을 권리

1. 난민은 모든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에서 법률구조 및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를 포함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사항에 있어서 그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3.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외의 다른 체약국에서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3장 유급직업

제17조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국민에게 부여하는 것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고용에 부과하는 제한적 조치는, 관련 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발효일에 이미 그 조치로부터 면제된 난민, 또는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그 체약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b)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

가 있는 자. 난민이 그러한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

3. 체약국은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있어서 모든 난민의 권리를, 특히 노동인력 수급계획 또는 이주민 계획에 따라 그 영역 내에 입국한 난민의 권리를 자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8조 자영업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자기의 뜻대로 농업, 공업, 수공업 및 상업분야에서 종사하는 권리 및 상업상, 산업상 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9조 자유업

1. 각 체약국은 그 국가의 관할기관이 인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그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난민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자국 영역 외에 국제관계에 책임이 있는 영역 내에서 그러한 난민의 정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장 복지

제20조 배급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전체에 적용되는 배급제도가 있는 경우, 난민은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21조 주거

체약국은, 주거에 관한 사항이 법령의 규제를 받거나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주거에 관하여 가능한 유리한 대우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2조 공공교육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외의 교육에 관하여, 특히 수학의 기회, 외국학교의 학업증명서, 학위수여증 및 학위의 인정, 수업료와 공납금의 면제 및 장학금의 수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3조 공적 구호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적 구호와 공적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4조 노동법과 사회보장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 (a) 보수의 일부가 되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수, 노동시간, 초과 근무 시 조치,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근무, 가내근로의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 및 노사의 단체교섭에 의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또는 행정기관의 규제를 받는 경우.
- (b)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모성보호, 질병, 불구,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및 국내법령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타 사고에 관한 법규정), 다만, 다음의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 (i)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ii)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령은 공공기금으로부터 전액 지급되는 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또한 일반 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기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난민의 사망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수혜자가 체약국의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체약국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이미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들간에 이미 체결한 협정 또는 장래 체결할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당해협정의 서명국의 국민에게 적용

되는 조건을 난민이 충족시키고 있는 한, 그 난민에게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상기한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의 언제든지 유효할 수 있는 유사한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가능한 한 난민에게도 확대하여 부여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5장 행정적 조치

제25조 행정적 원조

- 1. 난민이 그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외국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의 원조를 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은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의하여 그러한 원조가 난민에게도 제공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 2. 제1항에서 말하는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은, 난민에게 외국인이 통상적으로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는 것과 유사한 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그 감독하에서 이들 문서 또는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한다.
- 3. 상기와 같이 발급되는 문서 또는 증명서는 외국인이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는 공문서를 대신하는 것이 되고, 또한 반증이 없는 한 공신력을 가진다.
- 4. 빈곤한 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대우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조에 규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수료는 적절하여야 하고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조항의 규정은 제27조와 제28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동의 자유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에게,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서 거주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27조 신분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있으면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난민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8조 여행증명서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에게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영역 밖으로의 여행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여행증명서에 관하여서는 이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있는 다른 난민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또한 특히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가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종전의 국제협정의 체약국이 그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에게 발급한 여행증명서는 그것이 이 조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서 이 협약의 체약국에 의하여 인정되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제29조 재정 공과금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민에게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

할 (명칭에 관계없이) 세금, 공과금 이외의 별도의 것이나 고율의 것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기 조항은 외국인에게 신분증명서를 포함한 행정상 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법규를 난민에게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자산의 이전

1.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난민에게 그가 그 영역 내에 반입한 자산을 재정착을 목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체약국은 난민이 입국이 허가된 다른 국가에서 그가 재정착하는데 필요한 자산의 이전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그 신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체재하고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이 협약 제1조와 같은 의미로 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영역에서 직접 탈출해 온 난민에게,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하고 또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별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국가기관에 출두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주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이 그 국가에서의 지위가 합법적으로 정하여지고 또는 그 난민이 다른 국가에의 입국허가를 얻을 때까지만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입국허가를 얻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제32조 추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적법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달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자신이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결백함을 밝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또한 관할기관 또는 관할기관이 특별히 지명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이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필요하다고 보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한을 유보한다.

제33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은 그가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에 의하여는 요구될 수 없다.

제34조 귀화

체약국은 난민의 자국에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 체약국은 특히 귀화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와

비용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6장 집행 및 경과규정

제35조 국가기관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협약의 규정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 체약국은 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른 다음에 관한 정보 및 통계자료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 (a) 난민의 상태
- (b) 이 협약의 이행 상황, 그리고
- (c) 난민에 관한 현행 법령 및 장차 시행될 법령.

제36조 국내법에 관한 정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국내법령을 통보한다.

제37조 종전의 협약과의 관계

1. 이 협약 제28조 제2항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체약국간에 1922년

7월 5일, 1924년 5월 31일, 1926년 5월 12일, 1928년 6월 30일 및 1935년 7월 30일의 협정과,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및 1946년 10월 15일의 협정을 대신한다.

제7장 최종조항

제38조 분쟁 해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국간의 어떠한 분쟁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

제39조 서명, 비준 및 가입

1. 이 협약은 1951년 7월 28일에 제네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이 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은 1951년 7월 28일에서 동년 8월 31일까지 국제연합 유럽사무국에서, 동년 9월 17일에서 1952년 12월 31일 까지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다시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또한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전권대사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국가 또는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서명하도록 초청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고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1951년 7월 28일부터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40조 적용영역 조항

-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그 국가가 국제관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이 협약이 관련국에 대하여 발효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 그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을 행하고, 또한 그러한 적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 또는 관련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날의 양자중 늦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각 관련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에 관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헌법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영역의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41조 연방조항

- 체약국이 연방제국가이거나 또는 단일제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이 협약의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제국가가 아닌 체약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협의 입법권의 범위 내에 속하고, 연방의 헌법제도상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협의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는, 연방정부는 연방구성

국, 주 또는 현의 적절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호의적인 권고로서 이 규정을 통보한다.

- (c) 이 협약의 체약국인 연방제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전달된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특정규정에 관한 연방 및 그 구성단위의 법과 관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한 입법조치 또는 다른 조치에 의하여 그 규정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제42조 유보

-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항, 제33조, 제36조부터 제46조를 제외한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 이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한 어떠한 국가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3조 발효

- 이 협약은 여섯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 이 협약은 여섯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제44조 폐기

-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언제

든지 폐기할 수 있다.

-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관련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제40조에 따라 선언 또는 통고를 행한 국가는 그 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상기한 영역에 이 협약의 적용을 중지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5조 개정

-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국제연합 총회는 상기 요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권고한다.

제4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제1조 제B항에 의한 선언 및 통고
 - 제39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제40조에 의한 선언 및 통고
 - 제42조에 의한 유보 및 철회
 - 제43조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일

(f) 제44조에 의한 폐기 및 통고

(g) 제45조에 의한 개정의 요청

이상의 약속으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를 대표하여 적법한 위임을 받고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영어와 불어로 된 원본 1통을 작성하고, 원본은 국제연합 문서보존국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게 송부된다.

부 속 서

제 1 항

1. 이 협약 제28조에 규정된 여행증명서는 부록에 첨부된 견본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2. 증명서는 적어도 2개 언어로 작성되고, 그중 하나는 영어 또는 불어로 한다.

제 2 항

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의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린이는 부모중 한사람의 여행증명서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성인 난민의 여행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다.

제 3 항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자국민의 여권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항

특별한 경우 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발급된다.

제 5 항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재량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제 6 항

1.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개신 또는 연장은, 그 증명서의 소지인이 합법적으로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 정착하지 아니하는 한, 또한 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있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그 발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특히 권한을 위임받은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국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체약국은 이미 자국 영역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현재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난민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개신, 연장, 또는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7 항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 8 항

난민이 가기를 원하는 국가의 관할기관은 그의 입국을 인정할 용의가 있고, 또한 사증이 필요하다면, 그가 소지한 증명서에 사증을 부여한다.

제 9 항

1. 체약국은 최종 목적지가 되는 국가의 사증을 받은 난민에게 통과사증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2. 통과사증의 발급은 외국인에게 사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다.

제 10 항

출국사증, 입국사증 또는 통과사증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여권에 사증을 부여하는 경우의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항

난민이 다른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를 정한 경우,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책임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역의 관할기관에 있고, 그 난민은 그 기관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2 항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종전의 증명서를 회수하고, 증명서에 그것이 반송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해 준 국가에 이를 반송한다. 그러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발급기관은 회수한 증명서를 무효로 한다.

제 13 항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소지인이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언제든지 자국의 영역에 재입국하는 것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국은 전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명서의 소지인에게 자국 영역의 출입국에 관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체약국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난민의 체재가 일정기간 동안만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 난민이 체약국의 영역에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적어도 3개월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4 항

제13항의 규정만은 예외로, 이 부속서의 규정은 체약국의 영역에의 입국, 통과, 거주, 정착 및 출국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5 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이의 기재사항은 그 소지인의 지위, 특히 국적을 결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6 항

증명서의 발급은 그 소지인에게 발급국의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에 의한 보호를 결코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들 기관에 대하여 그를 보호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 부 록 >

여행증명서 견본양식

여행증명서는 소책자의 형식(약 세로 15센티미터, 가로 10 센티미터)을 갖춘다.

여행증명서는, 화학적 방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지워지거나 수정되는 일이 용이하지 않도록 인쇄되고, 또한 "1951년 7월 28일의 협약"의 용어를, 발급국의 언어로, 각 쪽마다 계속 반복 인쇄하기를 권장한다.

(소책자 표지)

여 행 증 명 서
(1951년 7월 28일 협약)

번호

(1)

여 행 증 명 서
(1951년 7월 28일 협약)

이 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또는 갱신되지 아니하는 한,
.....년.....월.....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성

명

동반자녀인

1. 이 증명서는, 이 증명서 소지인에 대하여 국가발행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를 부여할 목적으로만 발급된다. 이 증명서는 소지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의 국적에 여하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증명서 소지인은, 다음 일시 이후에 일시가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년.....월.....일 이전에 [여기에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속하는 국가를 기입]에 돌아오는 것을 인정한다.

[소지인이 돌아오는 것이 인정되는 기간은 3개월보다 짧은기간이어서는 아니된다]

3. 증명서 소지인이 이 증명서의 발급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그가 다시 여행을 하기를 원한다면, 소지인은, 거주국의 관할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 여행증명서는 새로운 여행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의하여 회수되어 이 증명서의 발급국에 반송된다.]¹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페이지를 포함한다.)

1. []의 문구는, 발급국의 정부가 희망하는 경우에 삽입한다.

(2)

출생지 및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
처의 성명
부의 성명

특징

신장
머리색
눈색
코의 생김새
얼굴형태
피부색
특기사항

동반자녀

성명	출생지 및 생년월일	성별
.....
.....
.....
.....

*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은 삭제한다.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페이지를 포함한다.)

(3)

소지인의 사진 및 발급기관의 직인
(필요한 경우) 소지인의 지문

소지인 서명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페이지를 포함한다.)

(4)

1. 이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에서 유효하다.

.....
.....

2. 이 증명서의 발급의 기초가 된 문서.

.....
.....

발급지

발급일

증명서 발급기관의 서명 날인:

수수료: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페이지를 포함한다.)

(5)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

수수료:년.....월.....일 에서
.....년.....월.....일 까지

장 소 일 시

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을 한
기관의 서명날인: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

수수료:년.....월.....일 에서
.....년.....월.....일 까지

장 소 일 시

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을 한
기관의 서명날인:

(6)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

수수료:년.....월.....일 에서
.....년.....월.....일 까지

장 소 일 시

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을 한
기관의 서명날인: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

수수료:년.....월.....일 에서
.....년.....월.....일 까지

장 소 일 시

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을 한
기관의 서명날인: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페이지를 포함한다.)

(7-32)

사증

이 증명서 소지인의 성명은 각 사증마다 기재되어야 한다.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페이지를 포함한다.)

III.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7년 1월 31일)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이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난민이 되었던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 새로운 사태에 의하여 난민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난민은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1951년 1월 1일의 기준시점에 관계없이 협약의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난민이 동등한 지위를 향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일반규정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에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 제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에 규정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및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역적 제한없이 적

용된다. 다만, 협약의 체약국이 된 국가가 협약 제1조 제B항 제1호 (a)에 따른다고 한 선언은 협약의 제1조 제B항 제2호에 의하여 확대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의하여서도 적용된다.

제2조 국가기관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또한 특히 이들 기관이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른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 및 통계자료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 (a) 난민의 상태
- (b) 이 의정서의 이행 상황
- (c) 난민에 관한 현행 법령 또는 장차 시행할 법령

제3조 국내법에 관한 정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국내법령을 통보한다.

제4조 분쟁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의 어떠한 분

쟁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

제5조 가입

이 의정서는 협약의 모든 체약국 및 국제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전문기관의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이 의정서에 가입하도록 초정받은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6조 연방조항

당사국이 연방제국가이거나 또는 단일제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a) 이 의정서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될 협약의 규정으로서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이 협약의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제국가가 아닌 당사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 (b) 이 의정서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될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혼의 입법권에 속하고, 연방의 헌법제도상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혼이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는, 연방정부는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혼의 적절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호의적인 권고로서 이 규정을 통보한다.
- (c)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연방제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전달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의정서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의 특정규정에 관한 연방 및 그 구성단위의 법과 관행에 관하여 설명하고, 또한 입법조치 또는 다른 조치에 의하여 그 규정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제7조 유보 및 선언

1. 어떠한 국가도 가입시에 이 의정서 제4조에 관하여 또한 이 의정서 제1조에 따른 협약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항 및 제33조를 제외한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당사국이 이 조에 의하여 행한 유보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협약 제42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한 유보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의한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한 어떠한 국가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4. 협약 체약국으로서 이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는 협약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행한 선언은, 관련당사국이 이 의정서의 가입시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달리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협약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또한 제44조 제3항의 규정도 이 의정서에 준용한다.

제8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제9조 폐기

1.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의정서를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5조에 규정된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효일, 가입, 유보, 유보의 철회, 폐기 및 이 의정서에 관계된 선언과 통고를 통보한다.

제11조 국제연합 사무국의 문서보존국에의 기탁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원본 1통으로 작성되고, 원본은 국제연합 총회의장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위하여 서명되었고 국제연합 사무국의 문서보존국에 기탁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인증등본을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 및 이들 회원국외에 상기 제5조에 규정된 국가에 송부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한

IV.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제 네 바, 1992년 1월

목 차

	조 항	페이지
서 문	I-VII	57
서 언	1-27	59
“난민”용어를 정의하는 국제문서	1-27	59
A. 초기 문서 (1921-1946)	1-4	59
B.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5	59
C.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6-11	60
D.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의 주요 규정	12	61
E.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13-19	62
F. 난민에 관한 지역문서	20-23	63
G. 비호 및 난민의 처우	24-27	64

제 1 부

난민지위 인정기준	28-187	67
제1장 일반원칙	28-31	67
제2장 난민인정조항	32-110	68
A. 정 의	32-34	68
(1) 법정난민	32-33	68
(2) 1951년 협약상의 일반적 정의	34	69
B. 용어 해석	35-110	69

조 항	페이지	조 항	페이지		
(1)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	35-36	69			
(2)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37-65	70	(6)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101-105	87
(a) 일반적 분석	37-50	70			
(b) 박 해	51-53	74	(7) 이중국적 또는 다국적	106-107	88
(c) 차 별	54-55	75			
(d) 형 별	56-60	76	(8) 지리적 범위	108-110	89
(e) 출신국 밖에서의 불법출국 또는 불법체재의 결과	61	77			
(f) 난민과 구별되는 경제적 이주민	62-64	77	제3장 적용정지조항	111-139	90
(g) 박해자	65	78			
(3)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66-86	78	A. 일 반	111-117	90
(a) 일반적 분석	66-67	78	B. 용어 해석	118-139	92
(b) 인 종	68-70	79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118-125	92
(c) 종 교	71-73	79	(2) 자발적인 국적의 회복	126-128	94
(d) 국 적	74-76	80	(3) 새로운 국적과 보호의 취득	129-132	95
(e)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77-79	81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가 있는 국가에서의 자발적인 재정착	133-134	96
(f) 정치적 의견	80-86	81	(5)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국적보유자	135-136	97
(4) “국적국 밖에 있는”	87-96	83	(6)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무국적자	137-139	97
(a) 일반적 분석	87-93	83			
(b)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	94-96	85	제4장 적용배제조항	140-163	99
(5) “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97-100	86			

조 항	페이지	조 항	페이지		
(2)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	144-146	100	C. 사실입증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안 (1) 정신장애인	206-212	121
(3) 국제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147-163	101	(2)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	213-219	122
(a) 전쟁범죄 등	150	102	결	220-223	125
(b) 보통범죄	151-161	102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162-163	106			
제5장 특례	164-180	107	< 부 록 >		
A. 전쟁난민	164-166	107			
B. 탈영병 및 병역기피자	167-174	107	1.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 전권대사 회의 최종문서에서 발췌	126	
C. 무력을 사용한 자 또는 폭력행위를 한 자	175-180	110	2.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당사국 명단	129	
제6장 가족결합의 원칙	181-188	112	3.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 발췌(제6조)	132	
제 2 부					
난민지위 인정절차	189-219	115	4. 1951년 협약 제1조 제F항 (a)(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련된 국제문서	134	
A. 일 반	189-194	115			
B. 사실확정	195-205	117			
(1) 원칙 및 방법	195-202	117			
(2)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 부여	203-204	119			
(3) 요 약	205	120			

서 문

I) 보편적 차원에서 난민의 지위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두가지 국제문서는 국제연합 체제내에서 채택되었다. 본 편람을 재발간할 당시 110개국이 협약 또는 의정서 또는 양 문서의 당사국이었다.

II) 이들 두개 국제문서는, 이 문서에서 난민으로 정의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그가 난민인지에 관한 평가, 즉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거한 난민지위의 인정은, 그 영역에서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신청 당시 체재하는 체약국의 의무가 된다.

III)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는 체약국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여러 체약국에서 행하는 조치에 따라, 난민지위의 인정에 적용된다.

IV) 고등판무관 업무계획 집행위원회는 제28차 회기에서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대하여 “정부의 지침서로서,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편람의 발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본 편람 초판은 집행위원회의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1979년 9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국제보호국에 의하여 발행되었다. 그 후 본 편람은 난민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공무원, 학자 및 법률가 등의 계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발간되었다. 현재 본 편람은,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지리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선언의 세부항목을 포함한, 국제 난민문서의 가입에 관한 최신 정보를 담고 있다.

V) 본 편람의 각 장은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규정된 난민의 정의의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설명은 1951년 협약이 1954년 4월 21일에 발효한 이래 약 25년동안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의하여 축적

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난민지위의 인정에 관한 각국의 관례가 고등판무관과 체약국의 관할기관간의 의견교환으로서 고려되고, 사반세기에 걸쳐 본 주제에 관하여 출판된 문헌을 고려해 넣었다. 본 편람은 실용적 지침으로서 마련된 것으로, 난민법에 관한 전문서는 아니며, 참고문헌 등에 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생략하였다.

VI)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본 편람의 집필자는 주로 집행위원회가 이 분야에 관하여 정한 원칙에 따랐다. 물론 각국의 관례의 유용한 지식에도 의존하였다.

VII) 본 편람은 여러 체약국에서 난민지위 인정에 관계되는 정부공무원의 지침서로 사용되도록 마련된 것이다. 본 편람이 또한 난민문제에 관계되는 모든 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유용하기를 기대한다.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국제보호국장
미셸 무살리 (Michel Moussalli)

서언

“난민”용어를 정의하는 국제문서

A. 초기 문서 (1921-1946)

1. 20세기 초기에 난민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인도적 이유로 난민을 보호하고 원조하는데 대한 책임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2. 난민을 위한 국제적 행동양식은 국제연맹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난민을 돋기 위한 많은 국제협정이 채택되었다. 이들 문서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제A항 제1호에서 언급되고 있다(제32항 참조).
3. 이들 문서의 정의는, 난민의 각 범주를 그들의 출신국, 그들이 떠났던 영역 및 종전의 본국에 의하여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정의에 의하면 “범주에 의하여”라는 정의의 해석이 간단하고 누가 난민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4. 초기 문서의 대상에 포함되는 자들의 일부도 현재는 난민지위의 공식적 인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들은 이하 제2장에서 다룬다. 1951년 협약 이전의 국제문서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 “법정난민”(statutory refugees)이라 한다.

B.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곧바로, 난민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난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문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난민상황에 관련된 임시협정을 채택하는 대신,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의 일반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법문서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1951년 7월 28일 국제연합 전권대사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54년 4월 21일에 발효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1951년 협약”이라 한다. (1951년 협약 본문은 pp.11-42에 게재.)

C.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6. 1951년 협약에 규정된 일반적 정의에 따라, 난민은 다음과 같은 자이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

7. 1951년이란 기한의 설정은, 이 협약이 채택될 당시, 각국 정부의 의무를, 그 당시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난민상황에 대해서만, 또는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난민상황에 대해서만 제한하려 했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¹⁾

8.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난민상황이 출현하였고, 1951년 협약규정을 그러한 새로운 난민에게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점차 느꼈다. 그 결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준비되었다. 국제연합 총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 의정서는 1967년 1월 31일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었고, 1967년 10월 4일에 발효하였다.

9.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는 1951년 협약의 실질적 규정을, 1951년

1) 1951년 난민협약은, 지리적 제한의 적용가능성을 또한 규정하고 있다.
(제108항에서 제110항 참조).

이란 기한의 제약이 없이 협약에서 정의되는 난민에게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의정서는 이와 같이 협약과 관련은 있지만, 독립된 문서로서, 그 가입은 협약 당사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0. 이하 조항부터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1967년 의정서”라 한다. (의정서 원문은 pp.43-47 참조)

11. 본 편람 집필 당시, 78개국이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 또는 양 문서의 당사국이었다. (당사국 명단은 <부록 2>참조)

D.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의 주요 규정

12.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는 3가지 형태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i) 난민인(또한 난민이 아닌) 자 및 난민신분으로 있었다가 그 지위를 상실한 자의 기본적 정의에 관한 조항.

이들 조항의 논의와 해석은 난민지위를 인정할 임무를 맡고 있는 이에게 지침이 될 의도로 본 편람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ii) 난민의 법적 지위 및 피난국에서의 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이들 조항은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난민지위 인정이 실제로 당해 개인 또는 관련 가족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난민지위 인정의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은 이 조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iii) 행정상 및 외교상 견지에서 이들 법문서의 이행에 관한 기타 조항.

1951년 협약 제35조 및 1967년 의정서 제2조는 체약국에게 국제연합 난

민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 사무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문서 조항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소에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13. 상기 A부터 C에 언급된 문서는 난민으로 간주되는 자를 정의하고 있고, 체약국에 대하여 그 영역 내에서 난민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에 따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가 1951년 1월 1일자로 설립되었다. 195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428 (V)에 부속서로서 이 사무소 규정이 첨부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의 후원하에서 이 사무소의 권한에 속하는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는다.

15. 이 규정은 고등판무관의 권한이 확대되는 자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의는 1951년 협약에 포함된 정의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로 인하여, 고등판무관은 시간적 제한²⁾ 또는 지리적 제한³⁾을 받지 않고 난민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

16. UNHCR 규정의 기준에 부합되는 자는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 내에 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양 문서중 어느 것에 의하여 그가 체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등판무관이 제공하는 국제연합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한 난민은 고등판무관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 속하는 자로서, 통상 "위임난민"(mandate

2) 아래 제35항에서 제36항 참조.

3) 아래 제108항에서 제110항 참조.

17. 전술한 내용에 따라, 일정한 자는 위임난민과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상의 난민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는 양 문서 어느 것에 의하여도 구속을 받지 않은 국가에 체재하고 있을 수 있고, 또는 시간적 제한 혹은 지리적 제한의 적용을 받아 "협약난민" (Convention-refugee)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는 여전히 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에 따라 고등판무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18. 상술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 428 (V) 및 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은, 난민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각국 정부와 고등판무관 사무소간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고등판무관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 지명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비준을 촉진하고, 이들 협약의 적용을 감독할 의무를 수행한다.

19. 그러한 협력은, 고등판무관의 감독임무와 결부되어,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고등판무관의 기본적인 관심사의 기초가 되고 있다. 고등판무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각국 정부가 설정하는 난민지위의 인정절차중에 다양하게 반영된다.

F. 난민에 관한 지역문서

20. 1951년 협약, 1967년 의정서 및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외에도, 난민에 관한 많은 지역적 협정, 협약 및 기타 문서가 있다. 이들 지역문서는 피난처의 제공, 여행증명서 및 여행편의 등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 어떤 문서는 "난민"이란 용어, 또는 비호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21. 남미에서는, 외교적 비호 및 영토적 비호문제가 국제형사법에 관한 조약(1889년 몬테비데오),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정(1911년 카라카스), 비호에 관한 협약(1928년 아바나), 정치적 비호에 관한 협약(1933년 몬테비데오), 외교

적 비호에 관한 협약(1954년 카라카스) 및 영토적 비호에 관한 협약(1954년 카라카스)을 포함한 많은 지역문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2. 최근의 지역문서로는 1969년 9월 10일 아프리카단결기구의 국가 및 정부의 정상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난민문제의 특별한 양상에 관한 협약을 들 수 있다.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2개 부분으로 구성된 “난민”용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은 1967년 의정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즉, 시간적 제한 또는 지리적 제한이 생략된 형태의 1951년 협약상의 정의). 두 번째 부분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난민”용어를 적용한다. 즉,

“외부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 또는 출신국 혹은 국적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으로 인하여, 출신국 또는 국적국 밖에 다른 장소에서 피난처를 구하기 위하여 상주지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모든 자”.

23. 본 편람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두 개 국제문서 즉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하의 난민지위의 인정만을 취급한다.

G. 비호 및 난민의 처우

24. 본 편람은 난민지위의 인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 예컨대 난민에 대하여 비호를 부여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후 난민으로서의 법적 처우는 취급하지 않는다.

25. 전권대사 회의의 최종문서와 1951년 협약 전문에는 비호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에는 비호의 부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등판무관은, 1948년 12월 20일과 1967년 12월 14일에 각각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및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의 정신에 따라 항상 관대한 비호정책을 호소하여 왔다.

26. 난민에 관한 각국 영역 내에서의 처우는,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주요 조항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2항 (ii) 참조). 더욱이 1951년 협약을 채택한 전권대사 회의의 최종문서에 포함된 권고 E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회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합의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의 모범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국가는 그 영역 내에 난민으로서 체재하고 있으면서 협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가능한 한 협약이 규정하는 대우를 부여함에 있어서 협약에 의한 지도를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한다.”

27. 이 권고에 의하여 “난민”용어의 정의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각국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제1부 난민지위 인정기준

제1장 일반원칙

28. 1951년 협약의 난민정의에 포함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는 협약상 난민이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그의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발생한다. 따라서 난민으로서의 지위의 인정은 그를 난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으로서 선언하는 것이다. 그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29. 난민지위의 인정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제 1단계는 사안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단계는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난민정의가 이렇게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30. 1951년 협약상 난민정의의 조항은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난민인정조항”(inclusion clause), “적용정지조항”(cessation clause) 및 “적용배제조항”(exclusion clause)으로 되어 있다.
31. 난민인정조항은 그가 난민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난민지위의 인정을 위한 적극적인 기본조건이 된다. 소위 적용정지조항과 적용배제조항은 소극적 의미가 있다. 전자는 난민이 난민자격이 정지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후자는 난민인정조항의 적극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이지만 1951년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